

##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

보건사회부령 제773호 ('85.10.28)

### 調査部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보건사회부령 제764호,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의 부칙 제1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원활한 시행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986년 3월 1일 이후 시험표시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(별표 2)의 2. 표시사항 및 기준의 가. 식품 및 첨가물의 (11). 유통기한란의 (가). 다음과 같이 한다.

(가) 년. 월. 일(제품의 특성 또는 제조 공

정상의 이유 등으로 년. 월. 일로 표시하기 어려운 제품의 경우에는 “제조일로부터 ○○일”을 표시하여야 할 식품(통조림제품을 제외한다)

- 과자류(빵류, 유처리식품에 한한다.)
- 어육연제품
- 유산균음료
- 유 및 유가공품
- 식육제품

#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부칙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(별표 2)의 2. 표시사항 및 기준의 가. 식품 및 첨가물란중 (11) 유통기한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(후단신설)	부칙 ①(시행일)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이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원활한 시행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986년 3월 1일 이후 시험표시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②(생략)	②(현행과 같음)